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125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울

담당변호사 김영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민

변론 종결 2023. 6. 27.

판결 선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5.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05,894,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550,612원을 114,656,0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5,894,59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 1) 원고는 2019. 7. 15.부터 2019. 9. 6.까지 C에게 136,338,975원 상당의 오징어 및 제사용품 생선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 2)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50,9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380,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5398호로 제기하였다.
- 3) 위 법원은 2020. 8. 19. "C는 원고에게 85,380,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 등

- 1) C는 2019. 9. 25.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20. 10. 21.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2) C는 2020.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3)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는 2021. 4.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21. 4. 20. 말소되었다.
- 4) C는 2021.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1. 6. 30. 접수 제118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원고 및 피고, I조합 등에 대한 채무,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이의

1) J은 2021. 8.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I조합은 2021.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E(중복)로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원고는 2021. 1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105,894,590원(= 원금 85,380,975원 + 지연손해금 20,513,61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9. 22. 작성된 배당표에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220,550,612원을 배당하고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5,894,59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K,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앞서 본 C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C는 이 사건 설정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설정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는, C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피고 또는 피고의 아버지 G 등이 원고에게 송금한 일시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이 C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설정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위 각

피담보채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가 2021. 4. 1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21. 4. 20. 말소되어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일반채권자의 지위가 된 이상 그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 내지 3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상당액만을 따로 떼어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2022. 8.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05,894,5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550,612원은 114,656,022원(= 220,550,612원 - 105,894,5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05,894,59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함철환

별지